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구미시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예정금액 : 67,095천원

다. 출연필요성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에 해당.

라.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3. 참고사항

가. 첨부서류

- 1) 출연 동의요구서(붙임)
- 2)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붙임)
- 3) 출연기관 현황(붙임)
- 4) 출연 사업계획서(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67,095천원)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1)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세정과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u>출자·출연 예정금액 : 67,095천원(시비 67,095천원)</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2019년도 예산액</th><th colspan="3">2020년도 예산안</th><th rowspan="2">전년대비 증 감 액</th></tr> <tr> <th>연구원 요구액</th><th>부 서 산정액</th><th>증 감</th></tr> <tr> <td>출연금 (시비 100%)</td><td>60,836</td><td>67,095</td><td>67,095</td><td>-</td><td>6,259</td></tr> </table>					구 분	2019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 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 100%)	60,836	67,095	67,095	-	6,259
구 분	2019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 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 100%)	60,836	67,095	67,095	-	6,259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도감독 부서인견 (중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연사업계획서																			

2)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방세재정포럼을 창설하는 등 재정분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음. 특히 지방세 쟁송사무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사매입 차입금의 조속한 상환과 자체수익 확대를 위한 수탁용역 확대가 필요함
- (운영실적 평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세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을 계획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하였음. 연구과제의 수요조사와 선정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나, 연구수행 결과가 법률 제개정 등 실질적으로 정책에 기여하도록 해야함. 지방세교육관의 설립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포용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등에도 노력이 필요함.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결산 지방세	2018년 결산보통세	2019년 예산액 (C)	2020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출연금	447,333,685	447,302,535	60,836	67,095	67,095		6,259

3) 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26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19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7명		66명 (본부장2, 연구위원21, 사무직28)		11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임원 (2019년 8월 현원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허성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19. 2.28. ~ 2020. 2. 27.		
	이사	(공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하균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9. 2.28. ~ 2020. 2. 27.		
	이사	이용석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9. 2.28. ~ 2020. 2. 27.		
	이사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9. 2.28. ~ 2020. 2. 27.		
	이사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19. 2.28. ~ 2020. 2. 27.		
	이사	박상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19. 2.28. ~ 2020. 2. 27.		
	이사	김항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19. 2.28. ~ 2020. 2. 27.		
	이사	윤여일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19. 2.28. ~ 2020. 2. 27.		
	이사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9. 2.28. ~ 2020. 2. 27.		
	감사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노홍래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28.~ 2021.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단위:백만원)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7,912 (설립이후 2018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8,188 (자산 총액)
	예산액	9,986	13,313	12,759		부채	4,45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9,551	12,102	10,843		자본	13,731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166				8,603		2,563

4)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정 과		출연	67,095천원(시비)

①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②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9년: 12,759백만원)중 10,843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③ 산출기초

- 출연액 : 67,095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연금	280	48	51	62	58	61

④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⑤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장 호
	담 당	김 진 오
	담 당 자	조 수 연 (480-6858)